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02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김정호·어기구·박 정

허종식 · 김남희 · 윤후덕

이연희 • 박희승 • 이훈기

박해철 · 신영대 · 전재수

장종태 · 이수진 · 임미애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위원이 직접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위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위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공직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보다 원활한 인사청문 제도의 운용과 국회의 국정통 제기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103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4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타 기관"을 "기타 기관 및 공직후보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기관은 제2항"을 "기관 또는 공직후보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기관이"를 "기관 또는 공직후보자가"로, "제2항"을 "제3항"으로, "기관에"를 "기관 또는 공직후보자에게"로 한다.

② 위원은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공직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	
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	
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 <u>기타 기관</u> 에 대하여	<u>기타 기관 및 공직후</u>
요구할 수 있다.	<u>보자</u> .
<u><신 설></u>	② 위원은 공직후보자의 인사
	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
	출을 공직후보자에게 요구할
	<u>수 있다.</u>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	③ 제1항 또는 제2항
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	<u>④</u> 제1항 또는 제2항
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u>기관은</u>	기 <u>관</u>
<u>제2항</u> 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	또는 공직후보자는 제3항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	<u>.</u>
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	

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수 있다.

<u>⑤</u> 제1항 또는 제2항
기관 또는 공직후보자가
<u>제3항</u>
기관 또는 공직후보
<u> 자에게</u>